

『漢陽法學』 논문심사 및 게재규정

1989. 12. 20.	제정
1993. 4. 5.	개정
1997. 2. 25.	개정
2005. 10. 7.	전면개정
2007. 12. 1.	개정
2008. 10. 4.	개정
2009. 7. 4.	개정

제1조 [목적] 이 규정은 한양법학회의 학술논문지인 『한양법학』(이하 ‘학회지’라 한다)에 게재할 원고의 작성요령, 제출, 심사, 선정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[원고모집과 투고자격] ①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은 학회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전에 공고를 통하여 모집한다.

② 원고를 투고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한 자이어야 한다. 다만 비회원은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.

제3조 [원고의 작성 및 원고의 제출] ① 원고는 200자 원고지 120매(「한글」의 문서분량 기준) 내외의 분량으로 작성하며, 이 분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결정하는 소정의 게재료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.

② 원고는 [별첨1]의 논문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인터넷메일 혹은 디스켓에 담아 파일의 형태로 학회지 발행일 45일전까지 편집이사에게 제출한다. (2009.7.4 개정)

③ 투고자는 [별첨2]의 양식에 따른 논문기고신청서를 원고에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. (2007.12.1 개정)

④ 투고된 논문의 심사와 게재를 위하여 소정의 논문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⑤ 본 규정에 의한 원고의 작성방법에 따르지 않은 원고는 수정을 위하여 필자에게 반환된다.

제4조 [심사위원 선정과 심사의뢰] ① 논문접수가 마감되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

소집하여 접수논문에 대한 심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.

- ②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모든 논문에 대하여 한 편당 3인씩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. 이 때 논문 제출자와 명백히 특별한 관계에 있어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.
- ③ 편집위원회가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대학 관련 분야의 교수 및 전문가 중에서 논문의 제목, 내용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선정하여야 한다.
- ④ 편집위원회가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를 의뢰할 때는 동일한 사람에게 동시에 3편 이상의 논문심사를 의뢰해서는 안 된다.
- ⑤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선정 및 심사의 진행에 관한 기밀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⑥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당해 논문의 토론자를 포함시켜 심사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5조 [심사기준] 원고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주제의 독창성
2. 내용의 전문성
3. 학술적 가치 및 실용성
4. 연구방법의 적정도
5. 연구자의 연구능력
6. 표절 · 모방 여부
7. 종합평가
8. 기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사항

제6조[심사절차]

-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로부터 논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논문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[별첨3]의 서식에 의한 ‘논문심사결과보고서’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② 심사위원은 논문심사결과보고서의 모든 기재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고, ‘종합판정’ 의견을 기재할 때는 다음의 요령을 따른다.
 1. 별도의 보완이 없이도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“게재 가(可)”에 “√”표 한다.
 2. 학회지에 개재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판단될 경우는 “게재 불가(不可)”에 “√”표 한다.
 3. 내용의 보완 혹은 수정을 거치면 게재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“수정

후 재심사”에 “√”표 한다.

- ③ 심사위원은 위 제2항의 ‘종합판정’ 이외에 “수정사항” 또는 “게재불가 사유”에 대하여도 분명하게 표기를 하여야 하며, 논문에 대한 심사소견 및 수정의견을 [별첨3]의 서식에 자세하게 기재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면 편집위원회는 종합판정 결과를 취합하여 다음 표의 기준에 의한 판정결과 및 심사위원 3인의 심사소견을 즉시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심사위원 판정	편집위원회 판정
○ ○ ○	게재 확정
○ ○ △	
○ △ △	
○ ○ ×	수정후 게재
△ △ △	
○ △ ×	
△ △ ×	수정후재심사
○ × ×	
△ × ×	
× × ×	게재 불가

* 범례 : ○=“게재 가”, △=“수정후 게재·재심사”, ×=“게재 불가”

- ⑤ 편집위원회가 ‘수정후 재심사’로 판정한 논문에 대하여는 재심절차를 진행한다.
- ⑥ 재심사는 ‘게재 가’와 ‘게재 불가’의 두 종류로만 판정하며, 초심의 결과와 재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‘게재 가’가 둘 이상이면 ‘게재’로 최종 확정한다.
- ⑦ 편집위원회의 결의가 필요한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(2007. 12. 1. 개정)

제7조 [수정지시] ① 논문의 집필형식이 본 학회의 규정에 맞지 않거나 미흡하여 “수정 후 재심사”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하여는 편집위원장이 [별첨 3]의 서식에 따라 수정지시를 한다.

- ② 수정 후 지시에 집필자가 불응하거나 2차에 걸친 통지에도 불구하고 수정논문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논문의 학회지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.
- ③ “게재 가”로 판정된 경우라도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여길 시는 내용상 수정을 지시할 수 있다.
- ④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한 회원이 본 규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논문에 대한 심사절차가 종료된 경우라도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해당 논문의 학회지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.

제8조 [학회지 발행일] 학회지는 매년 2월 말일, 5월 31일, 8월 31일, 11월 30일 연 4회에 발행한다.(2009년 7월 4일 개정)

제9조 [원고의 전자출판 등] ① 학회지는 종이 문서 외에 전자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, 학회지에 원고를 투고한 자는 투고 시에 전자출판에도 동의한 것으로 본다.
②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은 법률문화 발전과 학문연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전자도서관 기타 학술정보기관에 전송 및 제공할 수 있다. 이에 동의하지 않는 논문의 필자는 게재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당해 논문은 전송 및 제공되지 아니한다.

제10조 [심사료 지급] 편집위원회가 논문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논문심사를 의뢰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투고자가 납부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심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(이사회 결의 : 1989. 12. 20)

[시행일] 이 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이사회 결의 : 1993. 4. 5)

[시행일] 이 규정은 199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이사회 결의 : 1997. 2. 25)

[시행일]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이사회 결의 : 2005. 10. 7)

[시행일] 이 규정은 2005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. 단 제8조의 [학회지 발행일] 규정은 2006학년도(2006년 3월1일 이후)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이사회 결의 : 2007. 12. 1)

[시행일] 이 규정은 2007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이사회 결의 : 2008. 10. 4)

[시행일]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이사회 결의 : 2009. 7. 4)

[시행일] 이 규정은 2009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첨1] 원고 작성방법

I. 투고형식

- 원고는 논문, 판례평석, 번역, 자료 등 원고의 종류를 구별하여 작성한다.
- 원고는 원고표지, 제목, 저자, 목차(로마자표시만), 본문, 주제어, 참고문헌, 외국문 요지(키워드 포함)의 순으로 작성한다. 외국문 요지는 영문, 독문, 불문으로 작성하며,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른 외국어로도 작성할 수 있다.
- 원고의 표지에는 원고종류, 제목, 저자명, 소속, 직책, 학위, 주소, 전화번호와 E-mail 주소를 기재한다.
- 원고본문의 첫머리에 원고제목을 표기하고 제목아래에 저자명을 기재한다. 필자의 소속 및 직위는 각주(*)로 처리한다.
- 주저자(主著者), 공동저자 등을 구분하여 표기한다. 특별한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제일 앞에 기재된 자를 주저자로 본다.

II. 목차순서

I. 로마숫자(중앙으로, 진하게)

- 아라비아숫자(2칸 들여쓰기, 진하게)
 - 한글(4칸 들여쓰기)
 - (1) 괄호숫자(6칸 들여쓰기)
 - (가) 괄호한글(8칸 들여쓰기, 가, 나, 다 순)
 - 반괄호숫자(9칸 들여쓰기)
 - 가) 반괄호한글(10칸 들여쓰기)

III. 원고작성방법

- 본문작성('한글'프로그램('한글' 97제외)에 따름)

가. 용지종류

폭 : 196mm, 길이 : 266mm

나. 편집용지의 여백주기(F7키) 설정

위쪽: 28, 아래쪽: 28, 왼쪽: 28, 오른쪽: 25, 머리말: 15, 꼬리말: 0, 제본: 0

다. 글자모양

서체 : 바탕, 장평 : 100, 자간 : 0, 글자크기 : 10.5

라. 문단모양

왼쪽 : 0, 오른쪽 : 0, 들여쓰기 : 10, 줄간격 : 165, 문단위 : 0, 문단아래 : 0,
정렬방식 : 혼합, 낱말간격: 0

2. 각주표기

- 가. 저서 : 저자명, 서명, 출판사, 출판년도, 면수.
 - 나. 논문 : 저자명, “논문제목”, ○○학위논문, ○○대학(교), 출판년도, 면수 또는 저자명, “논문제목”, 서명, 판수, 출판사, 출판년도, 면수.
 - 다. 기념논문 : 저자명, “논문제목”, 논문집명, ○○○선생기념논문집, 출판사, 출판년도, 면수.
 - 라. 정기간행물 : 저자명, “논문제목”, 잡지명, 제○○권 ○호, 출판사, 출판년도, 면수.
 - 마. 판례 : 대법원 19○○.○○.○○. 선고 ○○다○○○○○판결
또는 대판 19○○.○○.○○, ○○다○○○○○.
외국판례는 그 나라의 표준 인용방식에 따른다.
 - 바. 외국문헌은 국내문헌에 준하여 표기하지만, 그 나라의 표준표기방식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.
 - 사. 국문 또는 한자로 표기되는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때는 면으로, 로마자로 표기되는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때는 p.(p. 501, pp. 252-501) 또는 S.(S. 501, S. 501 ff.)로 인용 면수를 표기한다.
 - 아. 외국인명은 이름, 성(姓) 순으로 표기한다(예 : Harm Peter Westermann).
 - 자. 공저자는 ‘ / ’를 사용하여 표기한다(예 : 강만길/박현채/변형윤).
 - 차. 면수나 연도 등에서 ‘부터 까지’를 나타내는 부호는 ‘-’를 사용한다.
 - 카. 문단모양
- 왼쪽 : 0, 오른쪽 : 0, 내어쓰기: 9, 줄간격: 130, 문단위: 0, 문단아래: 0,
정렬방식 : 혼합, 낱말간격: 0
- 타. 글자모양
- 서체 : 바탕, 장평 : 100, 자간 : 0, 글자크기 : 9

3. 참고문헌

- 가. 위치 : 본문과 국문주제어를 기재하고 참고문헌을 기재한다.
- 나. 순서 : 국문, 외국문헌 순으로 정리하되, 단행본, 논문, 자료의 순으로 정리한다.

다. 참고문헌의 표기방법은 각주의 표기방법과 같다.

IV. 기타

- 가. 직접 인용할 때에는 “”를 사용하고, 강조할 때는 ‘’, 「」, 밑줄, 굵은 글씨를 사용한다.
- 나. 저자의 논문이나 저술을 가리킬 때에는 ‘졸고’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, 반드시 이름을 밝혀 적는다. 또한 각주에도拙著,拙稿등의 표시를 하지 않고 저자의 성명을 표기한다.
- 다. 국문주제어와 외국문 키워드는 각각 5개 이상 작성한다. 국문주제어는 원고본문의 마지막 면에 기재하고, 외국문 키워드는 외국문 요지 아래에 기재한다.

[별첨2] 논문기고 신청서

漢陽法學 제 권제 집(200 발행예정)

논문기고 신청서

성명	(한자:) / (*영문:)	
소속 (*영문)		직위 (*영문)
주소		
주민번호		
연락처	(O)	(H)
휴대폰		
E-mail		
논문분야		
논문제목		
영문제목		
국문 주제어		
Key Words		
논문내용의 요약	※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	
투고자 유의사항	<p>투고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, 이를 어길시 계재가 거부될 뿐만 아니라 본 학회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됩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이 논문이 창의적이며, 다른 논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. 2. 이 논문이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을 것. 3. 이 논문이 현재 다른 학술지에 계재를 목적으로 제출되었거나 제출할 계획이 없을 것. 	
논문의 복사전송권의 학회 위임 여부	<p>가() / 부()</p> <p>* 복사전송권이란 학회지의 인터넷 전송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말함.</p>	

[별첨3] 학회지 투고논문 심사보고서 양식

한양법학 투고논문 심사보고서

1. 논문제목:
2. 게재예정지: 한양법학 제 권제 집(통권 제 집) (20 년 월 일 발행예정)
3. 초·재심구분: 초심() / 재심()
4. 세부심사결과

구분 등급	A	B	C	D
주제의 독창성				
내용의 전문성				
학술적 가치 및 실용성				
연구방법의 적정도				
연구자의 연구능력				
표절 및 모방 여부	있음() /	없음()		
투고요령의 준수성				
심사소견 및 수정의견	※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			
최종판정	게재가()	수정후 게재·재심사()	게재불가()	

=====

심사위원의 소속과 직위 : 성명 : 인
계좌번호: ()은행 () 예금주: ()